

第287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2月4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김진표 · 김재윤 · 노영민 · 권선택 · 이시종 · 양승조 · 이광재 · 송민순 · 오제세 · 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8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계진 · 강성천 · 윤석용 · 임태희 · 강창일 · 조전혁 · 현경병 · 손범규 · 안상수 · 김성수 · 정갑윤 · 임두성 · 구분철 의원 발의)(계속) 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강길부 · 김우남 · 윤석용 ·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8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혜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8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8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8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분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8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분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계속) 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8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 8

의)(계속)	8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명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이혜훈 · 나경원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8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한선교 · 구분철 · 양정례 · 강석호 · 이한성 · 이진삼 · 정의화 · 유성엽 · 안상수 · 정해걸 · 이성현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강창일 · 전병헌 · 정장선 · 김진표 · 양정례 · 우제창 · 오제세 · 박병석 · 김재윤 · 양승조 · 안민석 · 전해숙 · 최재성 · 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9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노철래 · 이한성 · 김소남 · 김성조 · 구분철 · 정해걸 · 조윤선 · 강길부 · 김영우 · 김학송 · 양정례 · 송훈석 · 신성범 · 김동성 · 이화수 · 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9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 · 유기준 · 양정례 · 백성운 · 송영선 · 김성태 · 강승규 · 이정선 · 김태환 · 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9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 · 강석호 · 강승규 · 김성태 · 김태원 · 김효재 · 나경원 · 남경필 · 박종희 · 배은희 · 백성운 · 손범규 · 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이혜훈 · 김재윤 · 김동철 · 광정숙 · 이정희 · 이미경 · 이애주 · 최문순 · 신낙균 · 김금래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9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이종걸 · 박기춘 · 이광재 · 양승조 · 장세환 · 김희철 · 안규백 · 신학용 · 김충조 · 이용섭 · 김성순 · 김우남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9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박기춘 · 최재성 · 양승조 · 김종률 · 조경태 · 김충조 · 김재윤 · 박선숙 · 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9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 · 변재일 · 우제창 · 이광재 · 김종률 · 백재현 · 김희철 · 이명수 · 노영민 · 오제세 · 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9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해걸 · 박대해 · 허태열 · 안상수 · 이혜훈 · 박보환 · 이한성 · 정하균 · 박종희 · 김종률 · 이진삼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9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 · 권영진 · 김성수 · 김성태 · 김을동 · 김태환 · 노철래 · 백성운 · 안상수 · 유성엽 · 이재선 · 이철우 · 정갑윤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9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김희철 · 이한성 · 이종혁 · 백성운 · 김재윤 · 이진삼 · 이인기 · 구분철 · 정병국 · 박종희 · 임동규 · 김효재 · 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9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 · 김장수 · 김용구 · 변웅전 · 이해봉 · 임영호 · 이상민 · 류근찬 · 김영진 · 김낙성 · 김창수 의원 발의)(계속)	9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석호 · 김광립 · 김태환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경재 · 정해걸 · 정희수 · 조원진 · 최구식 · 현기환 · 홍사덕 · 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9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김정권 · 강석호 · 김영록 · 이무영 · 장세환 · 강운태 · 정하균 · 황우여 · 우제창 · 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9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최규식 · 이무영 · 권경석 · 조진형 · 강기정 · 김유정 · 김충조 · 김희철 · 이윤석 · 김태원 · 신지호 · 유정현 · 이은재 · 이인기 · 장제원 · 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 · 이한성 · 이진삼 · 김정권 · 유기준 · 신상진 · 구분철 · 박종희 · 송영선 · 김희철 · 원희목 · 김우남 · 김재윤 · 이정선 · 최영희 · 최인기 ·	

- 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9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대·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9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9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계속) 10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10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운선·전혜숙·이계진·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10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유정현·김성희·정진섭·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10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운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례·김성곤·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10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립·유성엽·박종희·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10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립·유성엽·이종혁·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10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김성수·이시종 의원 발의)(계속) 10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10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강기갑 의원 발의)(계속) 10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김재균·김우남·최재성·최인기·이미경·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10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걸·황우여·이화수·이인기·오제세·안효대·이한성·손범규·배영식·김충환·김태환·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10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10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욱철·김우남·정해걸·이사철·조문환·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10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임영호·최인기·이재선·심대평·최철국·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10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양승조·강창일·최영희·최인기·전혜숙·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10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체창·김성태·정해걸·윤석용·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10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회창·박선영·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김낙성 · 이진삼 · 류근찬 · 임영호 · 박상돈 · 조순형 · 이상민 · 이영애 · 김창수 · 문국현 의원 발의)(계속) 10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1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11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계속) 11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해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1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진성호 · 황우여 · 안상수 · 안효대 · 권경석 · 임두성 · 고승덕 · 원희목 · 김성수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1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1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운환 의원 대표발의)(성운환 · 이한성 · 임동규 · 이정선 · 이성현 · 한선교 · 박기춘 · 변재일 · 박상돈 · 박순자 · 원유철 · 정해걸 · 강석호 · 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11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조문환 · 손범규 · 윤석용 · 강석호 · 박준선 · 황영철 · 이성현 · 이사철 · 남경필 · 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11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유원일 · 신영수 · 현경병 · 안효대 · 이정선 · 이한성 · 이윤성 · 손범규 · 오제세 · 황영철 · 이낙연 · 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11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양승조 · 변재일 · 천정배 · 김창수 · 이종걸 · 강창일 · 김영진 · 장세환 · 김효석 · 이미경 · 강기정 · 박상돈 · 이명수 · 박선숙 · 문학진 · 강봉균 · 우체창 · 김희철 · 최규성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11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송민순 · 안규백 · 박주선 · 우체창 · 강창일 · 이미경 · 최규식 · 박기춘 · 이두아 · 김재윤 · 이인기 · 이낙연 · 서종표 · 문학진 · 김상희 · 김춘진 · 전해숙 의원 발의)(계속) 11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안효대 · 이정선 · 이성현 · 이화수 · 임두성 · 김효재 · 이한성 · 김장수 의원 발의)(계속) 11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주영 · 김창수 · 심대평 · 이재선 · 권선택 · 안민석 · 김낙성 · 임영호 · 박상돈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11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김을동 · 김성수 · 노철래 · 박대해 · 김정권 · 정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11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재선 · 이용희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1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임동규 · 신영수 · 정수성 · 김영선 · 박상돈 · 강명순 · 정해걸 · 정갑윤 · 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11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손숙미 · 이정선 · 강성천 · 고승덕 · 신지호 · 배은희 · 여상규 · 나성린 · 강석호 · 윤석용 · 정미경 · 김금래 · 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 11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소남 · 손숙미 · 정미경 · 강명순 · 고성진 · 이군현 · 이에주 · 이종구 · 이정현 · 이화수 · 김옥이 · 이은재 · 조운선 · 김금래 · 안홍준 · 이한성 · 권경석 · 황진하 · 정옥임 · 신상진 · 김성수 · 강승규 · 이병석 · 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 11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손범규 · 이명수 · 이한성 · 임두성 · 김성수 · 김낙성 · 고승덕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1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유기준 · 강성천 · 유성엽 · 황우여 ·

- 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11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12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2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12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2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2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12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12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운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12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종·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12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재운·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12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계속) 12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희 의원 발의)(계속) 12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계속) 12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12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계속) 12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2

(15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정치자금 관련 법 등에 대해서 돌아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일차적으로 관련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는 계속해서 다루기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고, 또 우리 특위 활동 기간도 2월 말로 변경이 되어서 연장되

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6월 2일 선거와 관련되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을 중점으로 해서 논의를 해 온 바 있고, 오늘 그중에 일부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장윤석 소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이명수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김진표 · 김재윤 · 노영민 · 권선택 · 이시중 · 양승조 · 이광재 · 송민순 · 오제세 · 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이계진 · 강성천 · 윤석용 · 임태희 · 강창일 · 조전혁 · 현경병 · 손범규 · 안상수 · 김성수 · 정갑윤 · 임두성 · 구분철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강창일 · 강길부 · 김우남 · 윤석용 · 김정권 · 송민순 · 양승조 · 장세환 · 임두성 · 송영선 · 안상수 · 김성순 · 이미경 · 박선숙 · 최철국 · 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김희철 · 이한성 · 김종률 · 안민석 · 박기춘 · 이명규 · 김재균 · 안상수 · 문희상 · 장세환 · 이혜훈 · 최문순 · 이진삼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 · 우제창 · 김희철 · 박종희 · 양정례 · 이한성 · 홍정욱 · 이정선 · 정하균 · 김소남 · 유성엽 · 신상진 · 이화수 · 이진삼 · 임두성 의원 발의)(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 · 홍정욱 · 정하균 · 이진삼 · 김성곤 · 박은수 · 이한성 · 김성태 · 김희철 · 강기갑 · 홍희덕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발의)(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분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유정복 · 이한성 · 양정례 · 유성엽 · 구분철 · 남경필 · 손숙미 · 안홍준 · 신상진 · 정하균 · 이진삼 · 이정선 · 박영아 · 황우여 · 박대해 · 정해걸 · 윤영 의원 발의)(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정장선 · 강창일 · 김진표 · 김충조 · 박기춘 · 백재현 · 신학용 · 오제세 · 우제창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영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정해걸 · 정영희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유정현 · 유성엽 · 장세환 · 이진삼 · 김종률 · 안홍준 · 이한성 · 정하균 · 김세연 · 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조해진 · 이혜훈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이한성 · 임두성 · 안홍준 · 안상수 · 유성엽 · 신명수 · 박종희 · 강석호 · 송광호 · 황우여 · 이혜훈 · 나경원 · 김성태 · 이상민 · 정하균 · 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한선교 · 구분철 · 양정례 · 강석호 · 이한성 · 이진삼 · 정의화 · 유성

엽·안상수·정해걸·이성현·박보환 의원 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전병헌·정장선·김진표·양정례·우제창·오제세·박병석·김재윤·양승조·안민석·전혜숙·최재성·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노철래·이한성·김소남·김성조·구본철·정해걸·조윤선·강길부·김영우·김학송·양정례·송훈석·신성범·김동성·이화수·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유기준·양정례·백성운·송영선·김성태·강승규·이정선·김태환·윤석용 의원 발의)(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김성희·강석호·강승규·김성태·김태원·김효재·나경원·남경필·박종희·배은희·백성운·손범규·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혜훈·김재윤·김동철·곽정숙·이정희·이미경·이애주·최문순·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이종걸·박기춘·이광재·양승조·장세환·김희철·안규백·신학용·김충조·이용섭·김성순·김우남·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박기춘·최재성·양승조·김종률·조정대·김충조·김재윤·박선숙·이광재 의원 발의)(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변재일·우제창·이광재·김종률·백재현·김희철·이명수·노영민·오제세·박상돈 의원 발의)(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발의)(김유정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정해걸·박대해·허태열·안상수·이혜훈·박보환·이한성·정

하균·박종희·김종률·이진삼·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권영진·김성수·김성태·김을동·김태환·노철래·백성운·안상수·유성엽·이재선·이철우·정갑윤·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희철·이한성·이종혁·백성운·김재윤·이진삼·이인기·구본철·정병국·박종희·임동규·김효재·송영선 의원 발의)(계속)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김장수·김용구·변웅전·이해봉·임영호·이상민·류근찬·김영진·김낙성·김창수 의원 발의)(계속)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광림·김태환·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경제·정해걸·정희수·조원진·최구식·현기환·홍사덕·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정권·강석호·김영록·이무영·장세환·강운태·정하균·황우여·우제창·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최규식·이무영·권경석·조진형·강기정·김유정·김충조·김희철·이윤석·김태원·신지호·유정현·이은재·이인기·장제원·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이진삼·김정권·유기준·신상진·구본철·박종희·송영선·김희철·원희목·김우남·김재윤·이정선·최영희·최인기·김소남·김효재·강석호·손범규·박보환·김동성 의원 발의)(계속)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안민석·송영길·최영희·김동철·강기정·변재일·이석현·문학진·김춘진·홍재형 의원 발의)(계속)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임동규·이한성·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백성운 의원 발의)(계속)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이한성·임동규·유성엽·김정훈·이군현·이춘식·이윤성·최병국·정영희·허천·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윤선·전혜숙·이계진·안홍준·조문환·송광호·주호영·양승조·김상희·김재윤·이윤석·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유정현·김성희·정진섭·정갑윤·권경석·강성천·손숙미·홍장표·고승덕·유재중·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최구식·성윤환·유승민·이한성·유성엽·나경원·양정래·김성곤·정하균·김정훈·임동규 의원 발의)(계속)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립·유성엽·박종희·이종혁·이명규·조문환·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최구식·박민식·유승민·유기준·김무성·김광립·유성엽·이종혁·이명규·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송민순·유성엽·정미경·김기현·이한성·권영진·안상수·임해규·김성수·이시중 의원 발의)(계속)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김용구·이재선·이용희·변웅전·김낙성·이명수·임영호·이회창·김창수·박상돈·류근찬·

이진삼·조순형·이영애·박선영 의원 발의)(계속)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홍재형·강창일·유원일·유성엽·안민석·권영길·김재균·강기갑 의원 발의)(계속)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강창일·양승조·김동철·김재균·김우남·최재성·최인기·이미경·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안상수·유기준·정해걸·황우여·이화수·이인기·오제세·안효대·이한성·손범규·배영식·김충환·김태환·김성조 의원 발의)(계속)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진표·김재윤·천정배·안민석·신학용·박지원·조배숙·김희철·김춘진·김영록·최규성·정해걸·이춘식·김성순·강운태 의원 발의)(계속)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송훈석·박민식·이화수·이계진·최옥철·김우남·정해걸·이사철·조문환·이윤석·김영우·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우윤근·김창수·송훈석·임영호·최인기·이재선·심대평·최철국·류근찬·김용구·이영애·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우남·이미경·김동철·양승조·강창일·최영희·최인기·전혜숙·서갑원·이용섭·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주광덕·신영수·김성순·차명진·김종률·우제창·김성태·정해걸·윤석용·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변웅전·심대평·이회창·박선영·이재선·이명수·김용구·김낙성·이진삼·류근찬·임영호·박상돈·조순형·이상민·이영애·김창수·문국현

의원 발의)(계속)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송민순 · 최철국 · 양승조 · 송영길 · 백원우 · 최영희 · 강명순 · 이미경 · 전현희 ·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우남 · 박은수 · 박주선 · 백원우 · 서갑원 · 안민석 · 양승조 · 이광재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 양승조 · 김동철 · 서갑원 · 이미경 · 김재균 · 김우남 · 김상희 · 이석현 · 이용삼 · 김충조 의원 발의)(계속)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 이혜훈 · 유기준 · 김정권 · 김태원 · 유승민 · 이화수 · 손범규 · 이해봉 · 유성엽 · 안상수 · 윤상현 · 신영수 · 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진성호 · 황우여 · 안상수 · 안효대 · 권경석 · 임두성 · 고승덕 · 원희목 · 김성수 · 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양정례 · 노철래 · 정영희 · 송영선 · 박기춘 · 강운태 · 손범규 · 송민순 · 김을동 · 정하균 의원 발의)(계속)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이한성 · 임동규 · 이정선 · 이성현 · 한선교 · 박기춘 · 변재일 · 박상돈 · 박순자 · 원유철 · 정해걸 · 강석호 · 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권택기 · 조문환 · 손범규 · 윤석용 · 강석호 · 박준선 · 황영철 · 이성현 · 이사철 · 남경필 · 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유원일 · 신영수 · 현경병 · 안효대 · 이정선 · 이한성 · 이운성 · 손범규 · 오제세 · 황영철 · 이낙연 · 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 · 양승조 · 변재일 · 천정배 · 김창수 · 이종걸 · 강창일 · 김영진 · 장세환 · 김효석 · 이미경 · 강기정 · 박상돈 · 이명수 · 박선숙 · 문학진 · 강봉균 · 우제창 ·

김희철 · 최규성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신낙균 · 송민순 · 안규백 · 박주선 · 우제창 · 강창일 · 이미경 · 최규식 · 박기춘 · 이두아 · 김재윤 · 이인기 · 이낙연 · 서종표 · 문학진 · 김상희 · 김춘진 · 전해숙 의원 발의)(계속)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성수 · 안효대 · 이정선 · 이성현 · 이화수 · 임두성 · 김효재 · 이한성 · 김장수 의원 발의)(계속)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이주영 · 김창수 · 심대평 · 이재선 · 권선택 · 안민석 · 김낙성 · 임영호 · 박상돈 · 이낙연 의원 발의)(계속)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김을동 · 김성수 · 노철래 · 박대해 · 김정권 · 정영희 · 이한성 · 정하균 · 심대평 의원 발의)(계속)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권선택 · 김창수 · 심대평 · 이명수 · 이상민 · 이재선 · 이용희 · 임영호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임동규 · 신영수 · 정수성 · 김영선 · 박상돈 · 강명순 · 정해걸 · 정갑윤 · 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손숙미 · 이정선 · 강성천 · 고승덕 · 신지호 · 배은희 · 여상규 · 나성린 · 강석호 · 윤석용 · 정미경 · 김금래 · 김소남 의원 발의)(계속)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 · 김소남 · 손숙미 · 정미경 · 강명순 · 공성진 · 이균현 · 이애주 · 이종구 · 이정현 · 이화수 · 김옥이 · 이은재 · 조윤선 · 김금래 · 안홍준 · 이한성 · 권경석 · 황진하 · 정옥임 · 신상진 · 김성수 · 강승규 · 이병석 · 박영아 의원 발의)(계속)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손범규 · 이명수 · 이한성 · 임두성 · 김성수 · 김낙성 · 고승덕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유기준 · 강성천 · 유성

엽·황우여·한선교·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명수·김을동·박상은 의원 발의)(계속)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록·신성범·김종률·조진래·이인제·송훈석·송광호·이용삼·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최재성·조경태·이윤석·박병석·김유정·이미경·신낙균·김충조·오제세·최철국·김동철·최규식·이강래·안규백·김재균·원혜영·김부겸·강기정·장세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안효대·강길부·이윤석·김성조·최병국·신성범·이진복·김소남·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성수·김성희·김세연·박대해·박민식·서상기·이종혁·이화수·정갑윤·조원진·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이계진·신학용·정영희·유기준·최영희·유성엽·손범규·이해봉·이인기·박은수·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성조·이한성·한선교·조문환·유일호·임동규·성윤환·윤영·정옥임·배은희 의원 발의)(계속)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양승조·송민순·강창일·김영진·김유정·조영택·박선숙·이시종·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재윤·양승조·강창일·김창수·박상돈·이석현·강기정·김

재균·김영진·박은수·안규백·김부겸·최영희·이미경·김성순·조배숙·박지원·박기춘·김영환·조영택·안민석·김정권·우제창·문학진·이용섭·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동철·이미경·김효석·이석현·백재현·홍재형·양승조·안민석·김유정·서갑원·최영희·김상희·김재균 의원 발의)(계속)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홍준표·진성호·이한성·이명수·한선교·권영세·박준선·이명규·김성희 의원 발의)(계속)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원희목·현기환·김정훈·현경병·김정권·권택기·허천·신지호·진수희·김소남·장제원 의원 발의)(계속)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정갑윤·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심재철 의원 발의)(계속)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태원·김소남·정수성·이윤석·신지호·안경률·권경석·이명수·이은재·이범래·유정현·김영우·차명진 의원 발의)(계속)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시28분)

○위원장 김충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까지 87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위원회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8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윤석 소위원장께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小委員長 張倫碩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장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방금 김충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국한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

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는 성원이 되지 않아서 의결하지 못하고 전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제47조제5항에 대해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월 동시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시·군 단위에서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서 아주 시급히 이 점에 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시·도 의원정수와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추천한 그 정당이 제4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 의원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둘째는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가 그 지역의 인구나 생활권역이나 교통, 또 지역의 정서, 지역 현실 등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읍·면·동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이 선거법에 따른 기초의회의원선거구 조정 결과는 시·도에서 2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장운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것이 소위에서 보고한 것처럼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원선거구 조정 결과를 2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 정수는 조정해 주면서 시·군 의원정수를 조정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예로 저희 경기도 지역을 보면 417명 그대로 유지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 용인시·화성시의 기초의원을 늘려 주기 위해서, 여기는 물론 도의원도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이런 데에서 의원들을 빼다가 정수를 줄여다가 이 지역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동시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월 22일까지 결과를 내도록 하고, 또 6월 2일 지방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선거법 개정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정개특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정진섭 위원님, 당연하고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3월 3일자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회의 구성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로 직후부터 활동이 개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회가, 여야가 서로 충돌하는 그리고 충돌 정도가 아주 보통 수준을 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애석하게도 우리 정개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본회의 의결이 있던 뒤로부터 꼭 3개월 뒤인 6월 3일에서 첫 회의를 열었고, 그때 위원장과 그리고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는, 그런 아주 지연된 활동 개시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나마 활동이 개시가 늦었기 때문에 쫓기는 듯하겠지만, 쫓기는 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잘 아시는 대로 미디어법 파동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달로 예정했던 공청회 일정이 아주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그런저런 고비를 넘기면서 정개특위가 제대로의 몫을 못 했다는 것

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시인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활동 초기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에 가져와서 본질적으로 밑바닥부터 이런 문제도 정리해 나가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빠듯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불가피성에 의해서 기초의원 정수 조정 문제 그리고 관련되는 선거 환경의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정진섭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춘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우리 이춘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100분의 5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추천을 못 했을 경우에 여성 의원 1명을 못 하도록 무효화하는 그런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신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장운석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되었던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표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진도의 김영록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구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발언 기회를 한 번 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의 합리적인 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이춘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심사 과정에서 김영록 의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진행 도중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또 말씀……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민주당의 서갑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라는 선거법 47조제5항입니다. 여성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관련된 조항을 사실 강제 조항으로 했습니다. 시급 단위의, 시나 자치구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최소한 1인 이상의 여성 후보를 선출하도록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그것이 삭제되어서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개특위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정개특위의 의결사항은 여야가 합의로 해서 반드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법사위나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국회의 관례였고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국회 들어서 어겨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소수자나 여성의 보호와 관련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은 비단 정개특위의 선거법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1명을 강제로 공천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공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강제 조항을 두었는데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개특위를 열어서 이번에 좀 미흡합니다마는 47조5항,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는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시의 적절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하나로써 최소한 반영된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현재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결국 여성 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초등 교사를 뽑을 때는 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할당을 하고 외부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도 여성의 합격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해석을 달리해서 모든 선거구에서 여성을 모두 공천하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대한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엄밀히 따지는 헌법학자의 눈에 본다면 이것은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이런 것을 구상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 2월에 우리 위원회가 임기를 마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심의를 마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꼭 필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의원에게 있어서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왜 이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 국회의원도 소선거구를 하는데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관행, 관습, 관례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행, 관습이 합리적인 제도와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론이 난다면 이것은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나라당에서는 한 열 분 중 여덟 분 이상,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정개특위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정개특위의 처음부터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론을 피하고 옆의 샅길로 가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 소선거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짧게 말씀을……

○위원장 김충조 예, 김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관해서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가장 풀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의 기초 단위도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의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도 광역의원의 선거구도 전부 다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정작 가장 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우선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초의원에게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될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 정당들 간의 정치세력 간의 타협의 결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떤 정당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략적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의 관행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최종의 물을 정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정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의 이념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합리적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개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초

의원의 소선거구제 환원, 그것이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서 오늘 공직선거법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유기준 위원님 말씀이나 김기현 위원님 말씀이 글썽요,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아까 정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숙제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요.

사실 저는 왜 회의가 안 열리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는 간사님들 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무튼 지금 와서는 시간이 없어서 2월 22일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부진한 것이 있지만 이대로 해서 나가자, 제 말이 맞습니까? 장간사님?

○**張倫碩 委員**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다 하고 지금 여기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 조금 미진하지만 시간이 쫓겨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張倫碩 委員**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역단체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었고 2월 19일부터는 시군 단위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법안은 우선 처리를 하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2월까지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정개특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지금 시급한 안은 처리하지만 우리 특위 위원들 간에 또 논의가 되어서 어떤 점에서 합의가 되는 안이 있고 2월 달에 처리해도 그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선거 현장에서 적용도 가능하고 적용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정개특위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용경 위원** 정개특위 활동은 언제까지지요?

○**張倫碩 委員** 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경 위원** 2월 말까지……

○**張倫碩 委員** 예, 그래서 우선 이것만 오늘,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만 오늘 처리하고 정개특위는 계속 2월까지는 존속을 합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파행은 다, 뭐 저도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보아 온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국회에 그것이 이유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정치가 여러 가지로 후진이라고 하지만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끝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저는 사실 여기서 이 정개특위가 그동안 근 한 달을 안 열리다가 열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참석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까지 국회 전체가 파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임무를 못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사실 소위활동 그리고 전체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허태열 정치선진화 특위 위원장님과 또 장윤석 간사님 그리고 저는 이 정개특위 위원장의 입장을 떠나서, 민주당 쪽의 정개특위 위원장 그리고 서갑원 간사 이 네 분이 조찬 회동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 회동 또는 중일 회동 등등으로 해서 십여 차례에 가까운 그런 회합을 갖고 깊이 있게 숙의를 해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조** 예.

○**유기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 주시던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소선거구제 답변하다가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 말씀 때 끊어졌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충조** 아니, 위원장이 아까 다 말씀 드렸어요.

○**유기준 위원** 아니,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저희는……

○**위원장 김충조**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님과 김기현 위원님 말씀에 국회특위 위원장의 입장에서 사건이 결들여질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정당한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준 위원** 더 말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위원장 김충조** (웃음 소리) 최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기초위원의 소선거구제나 현행 선거구제 혹은 좀더 확대된 중선거구제나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張倫碩 委員** 유 위원!

(유기준 위원 퇴장)

가서 모시고 와요.

○**서갑원 위원** 한나라당 왜 그러니까, 이것?

○**최재성 위원** 지금 발언을 해서 화가 나신 겁니까?

○**김기현 위원** 그게 아니야, 최 위원하고 관련 없어.

○**위원장 김충조** 위원장 입장이 분명치 않다 그거지요.

발언하십시오.

○**최재성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충조** 어느 게?

○**최재성 위원**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나.

○**위원장 김충조** 아닙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충조** 부담 안 가져도 되겠습니까?

○**최재성 위원** 예.

우선 지난번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한 게 현행 선거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 정략적으로 한 결과라는 겁니까, 여야가 전부? 그래서 그런 지적은 이것을 합의해 내는 정당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확대 비슷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서로

존중되어야 될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특정 제도를 정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 선거제도를 훨씬 더 범주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특히 정당의 특정지역 독점이라든가 또 이게 기초의원 보고—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인데요—동의원이 아니냐는 과거에 지적이 있었어요. 정말 동별 이해관계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전략해 버리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정당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2월 말로 시한이 연장됐고 그래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인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논의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도 법안을 내놨고요. 현재 정몽준 대표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법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오픈 프라이머리법은 가부간에 빨리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양당이 공히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이것을 굳이—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張倫碩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위에서 준비해서 성안한 안중에서 별표2의 울산광역시의회의원란 선거구역과 관련된 이 부분은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지금 성안되어서 개정안으로 준비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회하고 의결을 해 주시고, 지금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 계류된 어떤 법안에 관해서도 정개특위는 의논할 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시급한 선거구 조정 문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먼저 의결을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그것에 관해서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좋습니다.

○이용경 위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倫碩 委員 이것부터 의결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충조 최재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상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위원장 김충조 예, 잠깐만요. 제가 얘기 도중입니다.

○구상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우리 장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월 28일까지가 우리 활동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6월 2일 선거에 대비해서 시급한 사항만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법은 시급을 다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관련 소위로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의제에 맞지 않고 시제에 맞지 않지만 최재성 위원께서 정몽준 대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께서도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본회의 참석하다가 좀 늦어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치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의 8, 90%가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소선거구제, 시의원도 소선거구제 모든 선거구제가 다 소선거구제인데 유독 기초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제가 여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무슨 집안싸움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런 선거구제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8,

90%가 원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당의 집안싸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민주당의 8, 90%가 찬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에요. 민주당 여론조사……

○구상찬 위원 아니, 나도 다 확인을 했어.

○서갑원 위원 한나라당 말씀만 하십시오. 민주당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다……

○구상찬 위원 무슨 일사분란이야,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소.

○서갑원 위원 당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선거구제도 못 고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같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몇몇 위원들은 사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런 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치개혁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많은 의원들이 원하고 국회의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싸움, 계파싸움, 집안싸움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잘 선처하셔서 국민들이 원하고 국회의원들이 원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원하는 소선거구제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자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張倫碩 委員 의결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충조 의결까지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진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조 예.

○정진섭 위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선거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몇 개가 어디라는 것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張倫碩 委員**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결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의원 정수 조정도 지금 의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의결하느냐 이 얘기지요.

○**박선숙 위원** 자료 4, 5쪽에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전문위원, 가져와 보세요.

○**박선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의결 직전에 그러면 김영록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해남 진도 완도 선거구의 김영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장님과 정개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광역시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의 진도군의 경우는 인구가 3만 4000명에 도의원 2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작년 12월 달에 정개특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좀 알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정개특위 의결이 된 뒤에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진도군 선거구 둘을 하나로 줄인 선거구 조정 관계는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내역 중간쯤 보시면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진도 선거구는 원래 전라남도 선거구가 46개에서 100분의 10 해서 4개를 늘려서 50개로 될 때 46개 선거구 그대로 할 때는 인구 하한선 미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읍면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4개 선거구를 더 늘려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늘려서 50개 선거구로 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50개 선

거구 내에서 인구 하한선, 상한선을 다시 따져서 이렇게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부터 먼저 봐야지요. 그렇다면 인구 하한선 미달된 지역이 곡성, 구례, 함평, 진도가 나왔는데 함평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전 기준으로도 하한선을 오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제가 된 케이스고, 진도는 새로운 인구 하한선 기준 1만 5300보다는 1만 5600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의한 하한선 기준을 오버를 했습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진도는 그대로 2개를 유지를 하고 그렇다면 2개 선거구를 줄인 것으로 결정한 뒤에 그다음에 플러스된 선거구를 예를 들면 6개를 조정을 하면 전체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종전 기준에 의해서 4개 선거구를 줄여서 8개 선거구를 상한선 초과지구로 구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판결 불일치 노력에 대해서, 이 해소 노력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만은 우리 진도의 경우에는 기준을 오버했는데도 죽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부산 선거구는 부산 강서1선거구, 강서2선거구 또 대구의 일부 선거구, 인천의 일부 선거구, 경기도의 일부 선거구는 하한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농촌 지역의 선거구 형편을 봐서 구제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도의 경우에는 하한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50석 기준으로 하면 헌법 불합치 여부를 새롭게 따졌을 때 하한선을 오버한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한선을 오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부터 먼저 죽여 놓고 결국은 상한선 초과 지역 8개를 살리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도군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진도군 주민으로서 이것은 대표권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번에 고치고 넘어가야지 저는 선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해서 이

것은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재론을 하셔서 100분의 11로 다시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서라도 진도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하한선 현재 불일치 선을 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조 김영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심사 과정상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의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인 선거구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46명이 50명 됐다,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우리 김 의원과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김 의원 오늘 말씀하신 것이 꼭 합당하다 싶으면 계속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김영록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그러십시오.

○김영록 의원 오늘이 지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면 바로 잡아 주셔야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개인적인 사안 같으면 제가 양해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 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진도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군민들 전체가 초미의 관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여 정개특위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문제제기가 다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조 요약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진행상 저해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또 기준을 설정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본다, 이런 입장으로 임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11, 이 조항과 진도 문제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50명으로 정수가 올랐으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획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만을 취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 김 의원님이 결정적인 오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록 의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문답을 계속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안에도 하한선을 분명히 1만 530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조 우리 김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소위에서 마련한 의사일정 제8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바는 배포해 드린

자료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으로 되어 있는 이 문건의 4페이지 하단 아래부터 다섯째 줄, 별표 2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의결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석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결하고자 하는 이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경 위원 저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조 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 그리고 체계·자구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리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강병규 제2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기정	구상찬	권영길	김기현
김충조	박선숙	서갑원	유기준
이경재	이용경	이춘석	장윤석
정진섭	최재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영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	-----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기선
선거실장	김용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29 서갑원·김창수·김영진·신학용·

이찬열·조영택·오제세·양승조·박선숙·전병헌·최재성 의원 발의)

12월 3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30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12월 31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12. 31 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

2010년 1월 5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10. 1. 12 최규식·김정권·양승조·강창일·김우남·송영길·이명수·김유정·원혜영·강기정·서종표 의원 발의)

1월 1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1 강기정·김우남·김재균·강창일·김동철·이미경·최영희·최규식·이석현·양승조·김효석·최재성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5 김춘진·최영희·김성곤·김유정·박은수·문학진·박선숙·이성남·신낙균·이종걸 의원 발의)

1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9 남경필·김무성·정병국·원희룡·정희수·박선영·강명순·김부겸·정태근·이춘석·황우여·박준선·권영진·정의화·김기현·권택기·구상찬·조정식·정두언·권영세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 여상규·신성범·박희태·조진래·성운환·정해걸·정갑윤·조문환·송광호·정병국·박민식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1. 25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
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강기정 의원의 소
개로 제출)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1. 25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
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강기정 의원의 소
개로 제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1. 25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
대 공동대표 임종대로부터 강기정 의원의 소
개로 제출)

이상 3건 1월 26일 회부됨